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규칙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mik337@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
- 방청 시 방청 질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상황에 맞도록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 의안이 발의·제출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
- 나.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2제3항)
- 다.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9조제1항)
- 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제1항)
- 마. 회의록 자구의 정정기한 현실화 (안 제49조제1항)
- 바.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송부
송부 제한 시간 통일 (안 제68조제3항)
- 사. 방청에 관한 규정신설
 -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 사용 제한 규정 신설
(안 제84조제1항제2호)

- 방청인이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84조제2항)

아.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수정

- 제8조제2항 : 부의장의 끝나는 때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5일전
 - ☞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
- 제13조제2항 : ②항 삭제 후 ③·④ 항 ②·③으로 이동
- 제21조 : 의결한 ☞ 의결할
- 제25조 : 제25조(의안 동의를 철회) ☞ 제25조(의안·동의를 철회)
- 제31조 : 때 하되 ☞ 등단하여 하되
- 제44조 : 위원모두 ☞ 의원모두
- 제55조: 회수 ☞ 횡수
- 제56조의2 : 법 제54조 ☞ 제27조
- 제60조 : 위원 ☞ 위원
- 제75조 :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제77조제1호 : 손상하는 ☞ 손상시키는
- 제77조제6호 : 문란케 하는 ☞ 문란시키는

사. 별지 서식 신설

- 별지 제1호서식 : 청가서
- 별지 제2호서식 : 결석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 5분 자유발언 신청서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군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군포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때는”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는”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부의장의 끝나는 때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5일 전”을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의결한”을 “의결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의장은”을 “의장은 의안의”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를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의안 동의를 철회)”를 “(의안·동의를 철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때 하되**”를 “**등단하여 하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기립 또는**”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기립이나**”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위원 모두**”를 “**의원 모두**”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 전단 중 “**법 제54조**”를 “**제27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를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로,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7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호 중 “**손상하는**”을 “**손상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란케 하는**”을 “**문란시키는**”으로 한다.

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가 서

수 신 : 군포시의회 의장

본 의원의 (본회의, 위원회) 청가서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2. 기 간 : . . . ~ . . . (일간)

3. 사 유 :

※연 락 처 :

년 월 일

군포시의회 의원

(인 또는 서명)

결 석 신 고 서

수 신 : 군포시의회 의장

본 의원의 (본회의, 위원회) 결석 신고서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2. 기 간 : . . . ~ . . . (일간)

3. 사 유 :

※ 연 락 처 :

년 월 일

군포시의회 의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신청의원		서명	
발언일자	제 회 임시회/정례회 제 차 본회의(. .)		
발 언 취 지	※ 구체적으로 ○		
집행부 답변	○ 요구함() ○ 요구안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u>군포시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포시의회</u>----- ----- ----- -----.</p>
<p>제2조(등록) <u>의회의원</u>(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군포시의회의원</u>----- ----- ----- -----.</p>
<p>제4조(개회식) <u>의회</u>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p>	<p>제4조(개회식) <u>군포시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때</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 <u>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u> ----- ----- -----.</p>

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제1항 선거는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끝나는 때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회기) ①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의결할 -----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② (생략)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 ⑤ (생략)

제25조(의안 동의를 철회) ①·②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의 -----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안·동의를 철회) ①·

(생략)

제31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때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생략)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한 발언신청서(별지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 ④ (생략)

제44조(투표절차) ① ~ ③ (생략)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언의 장소) ① -----
등단하여 하되,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3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표결방법) ① -----
-----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투
표용지에 의한 투표, 기립이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투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원 모두-----
-----.

제4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 ④ (생략)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 절차는 법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에 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

회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27조 -----
-----.

제5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보고)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이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8조(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이 기재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③ -----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

-----.

제60조(위원장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48시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항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
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 ⑥ (생략)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
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
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야 한다.<본항변경개정 2009.0
8.10.>

제7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
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7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

-----.

제71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회의의 질서유지) -----

-----.

1. -----
----- 손상

하는 언동

2. ~ 5. (생략)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8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략)

<신설>

3. ~ 8. (생략)

<신설>

시키는 -----

2. ~ 5. (현행과 같음)

6. -----
----- 문란시키는 -----

제83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

-----.

1. (현행과 같음)

2.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3. ~ 8. (현행과 같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